

러 · 일전쟁과 일제의 국권침탈

1. 러 · 일전쟁(1904~1905)

1) 배경

- ① 러시아의 한반도 조차 기도 : 군항 블라디보스토크와 여순[旅順,뤼순]을 연결하는 해군기지를 획득하기 위해 마산과 목포 등을 기지화하려다가 일본의 반대로 실패(1899) ② 제1차 영·일동맹(1902)
- 영국과 일본은 청에 대한 영국의 이권과 한국에 대한 일본의 이권을 상호 인정함으로써 한반도에서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균형을 깨뜨린 결정적 계기가 됨
- 따라서 일본은 러시아에 대한 전쟁도발에 적극성을 띠었고, 미국도 일본을 원조
- 용암포사건(1903) : 러시아가 서해안의 군사기지를 얻고 자 압록강 어구의 용암포에 포대를 건설하고 이를 조차.

2) 러시아와 일본의 협상 결렬

- ① 러시아 : 일본에 북위39°선 이북 땅을 중립지대로 만들 것을 제안
- ② 일본 : 압록강 전후하여 만주의 이권은 러시아가, 한반 도의 이권은 일본이 차지 주장

3) 러·일전쟁 발발(1904.2)

- ① 일본은 러시아와의 협상이 결렬되자 요동반도의 여순항에 기습공격을 가해 전쟁 시작
- ② 울릉도해전에서 러시아 발틱함대를 격파한 일본이 전쟁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고 1905년 러시아에서 발발한 페데르스부르크혁명(피의 일요일사건1905.1.9)으로 전쟁이 조기에 종료

2. 일제의 국권피탈

1) 국제적으로 일본의 한국지배를 묵인한 조약

- ① 가쓰라:태프트 밀약(10905.7): 미국은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을, 일본은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상호 인정
- ② 제2차 영·일조약(1905.8) : 영국이 일본의 조선 지배를 인정
- ③ 포츠머스 강화조약(1905.9) : 일본은 영국과 미국의 지원을 받아 러·일전쟁에서 승리, 러시아로부터 조선에 대한지배권을 인정받음

Ⅱ 사료읽기 Ⅱ

□ 가쓰라·태프트 밀약

첫째, 일본은 필리핀에 어떠한 침략적 의도도 품지 ㅇ낳으며,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한다.

둘째, 극동의 평화를 위하여 미·영·일 3국은 실질적인 동맹관 계를 확보한다.

셋째, 러·일전쟁의 원인이 된 한국은 일본이 지배할 것을 승인한다.

□ 포츠머스 강화조약

일본의 한국에 있어서의 정치상·군사상·경제상의 특별 권리를 승인할 것

요동반도의 조차권과 장춘·여순간의 철도를 일본에 넘길 것 북위 50°이남의 사할린 섬을 일본에 할양할 것

2) 조선국권 침탈을 위한 일본의 불법 조약 추진

① 한·일의정서(1904.2.23)

- 러.일간의 전쟁의 기운이 감돌자 대한제국은 중립국 선언 $(1904.1) \rightarrow$ 자력으로 중립국을 이룰 수 없다며 러.일 양측으로부터 거절
- 러.일전쟁을 구실로 한반도에 일본군 병력 배치 →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 한.일의정서 강요
- **내용**: 표면적으로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조선의 독립보전, 그러나 실제로는 시정 개선에 관한 충고의 권한 및 일본 군대의 주둔권 및 토지 수용권 등 제반 군사적 권리확보
- 결과 : 경부철도, 경의철도 등 주요 간선철도의 전쟁을 위한 군용으로 건설, 임시 파병된 일본군대의 영구주둔 태세 마련(용산에 한국주차군사령부 설치1904.3), 군사경찰제 실시(1904.7)

Ⅱ 사료 읽기 Ⅱ

□ 한일의정서

제1조 한·일 양제국은 항구불역(恒久不易- 영원히 변치 않음) 의 친교를 보지(保持)하고 동양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를 확신하고 시정(施政)의 개선에 한한 충고를 들을 것.

제2조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황실을 확실한 친의로 써 안전·강녕하게 할 것.

제3조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확실히 보증할 것.

제4조 제3국의 침해나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의 황실 안녕과 영토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대일본제국 정부는속히 임기응변의 필요한 조치를 행할 것이며,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히 편의를 제공할 것. 대일본제국 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임기수용 할 수 있다.

제5조 대한제국 정부와 대일본제국 정부는 상호의 승인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훗날 본협정의 취지에 위반할 협약은 제3국간에 정립(訂立)할 수 없다.

제6조 본협약에 관련되는 미비한 세부 내용은 대한제국 외부 대신과 대일본제국 대표자 사이에 임기 협정한다.

② **제1차 한·일협약(1904.7)** : 고문정치 실시

- 러일전쟁의 전황이 유리하게 전개되자 제1차 한.일 협약 강요 및 불법 체결(비준서 교환하지 않음, 제목도 없음)
- **내용**: 일본이 추천하는 재정고문(메가다)과 외교고문(스 티븐슨)을 용빙하여 재정.외교 문제는 이들의 자문을 받아 시행
- 결과 : 재정·외교뿐만 아니라 궁내부, 학부, 군부 등 부서

에도 고문 혹은 그에 준하는 직위의 일본인 배치 및 고문 정치로 실제 권한을 장악,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1905.2)**

일본 해군은 러·일전쟁 중 동해에서의 러시아 군함 활동을

Ⅱ 읽기자료 Ⅱ

□ 일본의 독도 편입

정찰하기 위해 1904년 8월에 울릉도의 두 곳에 무선전신 시설을 갖춘 망루를 설치하면서 독도에도 망루를 세우기 위해 1904년 9월부터 군함을 파견해 준비 조사를 실시함. 이 때 일본 해군성은 시마네현에 사는 나카이 요자부로라는 어업사업가가 대한 제국의 영토인 독도에서 강치 등 어로의 독점권을 대한 제국 정부로부터 얻기 위해 일본 농상무부가 대한제국 정부를 상대로 교섭해 줄 것을 농상무부에 요청하고 있으로 농사무를 소사구자으로부터 통법받았다. 이에 해

대한제국 정부를 상대로 교섭해 줄 것을 농상무부에 요청하고 있음을 농상무부 수산국장으로부터 통보받았다. 이에 해군성 수로부장 키모츠키 카네유기 제독은 나카이를 불러"그 섬은 무주지인 만큼 대한 제국정부에 빌려 달라고 요청할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에 그 섬을 일본 영토로 편입하고나서 빌려 달라고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함.

일본은 이 '무인도'는 다른 나라에서 이 섬을 점령했다고 인정할 만한 형적이 없고, 재작년에 우리나라 사람 나카이 요자부로라는 이가 어사를 짓고 인부를 옮겨놓고 사냥 도구 를 갖춰 놓은 뒤 강치 사냥에 착수했으며 이번에 영토 편입 과 대하를 출원했는데 이 기회에 소속과 섬 이름을 확정할 필요가 있는 만큼, 그래서 이 섬을 다케시마라고 이름 짓고 지금부터 시마네 현 소속 오키시마 도사의 소관으로 함이 가하다고 하면서 내무성 지령에 따라 시마네 현 지사는 2월 22일에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 "북위 37도 9분 30초, 도경 1백 31도 55분, 오키시마로부터 북서쪽으로 85해리에 떨어져 있는 섬을 다케시마라 부르고 이제부터 시마네 현 오키시마 도사의 소관으로 정한다." 라고 고시함.

□ 우리 역사 속 독도

울릉도의 속도인 독도(獨島)는 우산도(于山島), 삼봉도(三峰 島), 자산도(子山島) 등으로 불려져 왔는데, 신라 지증왕 13 년(512)에 울릉도(우산국)가 신라영토로 편입된 이후 독도도 고려, 조선조말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영토로 내려왔다. 『 세종실록』「지리지」나『동국여지승람』등 각종 지리지에 울 릉도와 우산도(독도)가 함께 기록되어 있으며, 조선시대 각 종 고지도에도 우산도가 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다. 조선후기 에는 울릉도에 대한 지배권이 강화되면서 숙종때부터 삼척 영장(三陟營將)이 관할하게 되었으며, 1895년부터 도장(島長) 을, 1898년부터 도감(島監)을 중앙에서 파견하였다. 그 후 1900년에 대한제국은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고, 그 관할구역으로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 그리도 석도 (石島)를 함께 규정해 놓았다. 여기서 석도란 바로 독도를 의미한다. '석도'를 훈독하면 '돌섬' 혹은 '독섬'이 된다. 1905 년 2월 일본이 독도를 일본의 시마네현(島根縣)에 편입시킬 당시에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은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 임을 지령 제3호(1906.5.20일자)로 분명히 밝혀 놓았다.

③ **제2차 한·일협약(을사조약, 1905.11)** : 외교권 피탈, 통감 부 설치

- 일본의 조선 보호권 확립을 위해 열강의 양해가 필요(태

프트-가쓰라 각서(1905.7), 2차 영일동맹(1905.8), 포츠머스 조약(1905.9))

- 국내적으로는 송병준.이용구 등으로 하여금 일진회(一進會)를 조직하여 한.일간 보호조약의 필요성을 선전토록 함 외교권 접수와 보호권 설정의 총책임자 이토 히로부미고종에게 조약체결 강요 → 고종거절 → 일본군대를 동원하여 궁궐 포위 및 고종의 거처인 덕수궁 중명전(重明殿)에수십명의 헌병을 배치하여 강박하고 각료회의 소집 → 참정대신 한규설, 탁지부대신 민영기, 법부대신 이하영 등 조약체결반대 → 이토는 각료의 개별의사 확인, 학부대신 이완용, 외부대신 박제순, 내부대신 이지용, 군부대신 이근택, 농상공부대신 권중현 동의(을사5적), 외부대신 직인 강제날인 → 이토 히로부미의 일방적인 보호조약 통과 선포 및회의 종결
- **내용**: 일본은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함, 일본의 중계 없이 국제 조약이나 약속을 못함, 통 감1인을 둠, 개항장에 이사관을 설치함
- **결과** : 외교권박탈, 통감부 내정장악(초대통감 이토 히로 부미)
- **대한제국의 대응**: 대한매일신보(영국인 베델운영)에 '을 사조약 부인 황제 친서' 발표, 의병활동 지원, 1907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을사조약의 무효를 알리는 특사(이상설, 이준, 이위종) 파견

Ⅱ 사료 읽기 Ⅱ

□ 을사조약

제1조, 일본국정부는 재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금후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監理),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의 신민(臣民) 및 이익을 보호한다.

제2조, 일본국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할 임무가 있으며, 한국정부는 금후 일본국정부 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 나 약속도 하지 않기로 상약한다.

제3조, 일본국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폐하의 궐하에 1명의 통감(統監)을 두게 하며, 통감은 오로지 외교 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서울)에 주재하고 한 국 황제폐하를 친히 내알(內謁)할 권리를 가진다.

일본국정부는 또한 한국의 각 개항장 및 일본국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理事官)을 둘 권리를 가지며,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재한국일본영사에게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장리(掌理)한다. 제4조, 일본국과 한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두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한다.

제5조, 일본국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

④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19097.7): 차관정치를 실시하여 조선의 행정권을 장악, 군대해산

Ⅱ 읽기자료 Ⅱ

□ 을사조약 무효선언

을사조약 무효선언서들은 고종황제가 1905년부터 일본의 압력으로 퇴위할 때까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투쟁해 왔음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또 일본의 주장과 달리 을사조약이 황제의 위인, 조인, 비준이라는 국제조약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강박으로 체결됐음을 입증한다.

일제는 1905년 11월 18일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한국의 외교 권을 빼앗았다. 당시 조약체결을 위해 특파대사로 한국에 온 이토 히로부미는 주일공사관의 문서관장을 지낸 마에다 교사 쿠를 시켜 한국외부대신의 관인을 훔쳐 조약문에 날인하게 했다. 물론 조약체결 당사자인 대한제국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에게는 양국 통치권자의 위임 절차가 전혀 없었으므로 합법적인 조약이 아니었다. 조약체결 전후에 고종은 헐버트와 민영찬을 잇따라 미국에 파송해 조·미수호조 약에 따른 선처를 요청했다. 또 알렌에게 따로 밀지를 보내 미국의 협조를 부탁했으나 미국은 '비공식 비밀외교'라며 묵 살하고 만다.

조약이 체결되고 일본의 통감부 설치가 임박해지자 고종황제는 1906년 1월 29일 국서를 만들어 을사조약 무효와 통감파견 반대를 공식 선언한다. 문서는 별도의 제목 없이 고종황제의 주장을 담은 6개의 조항으로만 이뤄져 있어 당시 다급한 상황을 엿보게 한다. 그런 인장만은 대한제국에서 외교문서에 사용하던 '대한제국 국새'를 찍어 국가문서임을 분명히하고 있다. 이 문서는 당시 특파원으로 국내 파견된 영국 트리뷴지 더글러스스토리 기자에게 전달되었고 스토리 기자는이 문서를 트리뷴지 1906년 12월 1일자에 보도, 고종이 조약체결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서양에 알렸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열강의 협조가 뒤따르지 않자, 고종은 헐버트를 특별위원으로 임명해 일본을 만국공파소에 제소하는 한편 미국과 유럽의 9개국 원수에게 친서를 발송한다. 1906년 6월 22일 작성한 친서는 고종황제가 직접 작성한 밀지를, 자신이 선택한 밀사에게 위임했다는 점에서 스토리 기자에게 전달된 국서보다 한 차원 진전된 것이다. 친서 전달은 만국평화회의가 연기된 바람에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

<1906년 1월 29일에 작성된 황제 친서>

- 1. 1905년 11월 17일 일본사신과 박제순이 체결한 조약 5조는 황제께서 처음부터 인허하지 않았고 또한 서명하지 않았다.
- 2. 황제께서는 이 조약을 일본이 마음대로 반포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 3. 황제께서는 독립 황제권을 조금도 다른 나라에 양여하지 않았다.
- 4. 일본이 외교권에 대해 조약을 강제한 것도 근거가 없는데 하물며 내치상에 한 문제라도 어떻게 인준할 수 있는가?
- 5. 황제께서는 통감이 와서 상주하는 것을 허락치 않았고, 황 제권을 조금이라도 외국인이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 지 않았다.
- 6. 황제께서는 세계 각 대국이 한국외교권을 함께 보호하고 그 기한은 5년으로 할 것을 원함



울사조약 체결 직후 작성된 고종황제의 울사조약 무효선언서와 이 국서를 보도한 영국 트리뷴지(1906년 12월1일자),





<대한매일신보> 1907년 1월 16일자에 수록된 '을사조약 무효선언 국서'의 내용이다. 이것은 1906년 1월 29일에 작성된 것으로 '대한국새'가 찍혀 당시 영국 트리뷴지의 더글라스 스토리 기자에게 전달되었고, 그후 이 내용은 1906년 12월 1일자트리뷴지에 보도되어 "황제가 을사조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서양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위의 <매한매일신보>는 그내용을 다시 받아서 국내 보도한 것이다

□ 헤이그 특사 파견(19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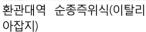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이상설, 이준, 이 위종 3인을 특사로 파견하여 각국 대표를 방문하고 국제기자 협회에서 연설(이위종)을 통하여 을사조약의 무효와 일본의 불법만행을 폭로하여 국권회복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외교권이 없다는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일본은 이 사건을빌미로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1907.7), 순종을 즉



위시켜 연호를 융희(隆 熙)라 하였다. 또한 이는 정미7조약 및 군대해산 의 구실이 되었다.

헤이그 특사(왼쪽부터 이준, 이상설 이위종)







영친왕(순종이복동생)을 인질 로 삼아 고종 퇴위 강요

- ⑤ **한일합방조약(19010.8)** : 조선의 국권을 빼앗고 총독부 를 설치, 헌병경찰제를 실시
- 이완용과 데라우치(3대 통감)사이에 '한국 병합에 관 한 조약' 조인 후 내용 공포 → 조선총독부 설치

Ⅱ 사료읽기 Ⅱ



□ **순종의 유언**(1926년 7월 28일자 미국 교민단체의 기관지 '신한민보'에 실린 내용)

한 목숨을 겨우 보존한 짐은 병합 인준 사건을 파기하기 위하여 조칙하니 지난날의 병합 인준은 강림이 역신의 무리와 더부러 제멋대로 해서 제멋대로 선포한 것이요. 다 나의 한바가 아니라. 나를 유폐하며 나를 협제하여 나로 하여금 명백히 말을 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니 고금에어찌 이런 도리가 있으리오. 나 구차히 살며 죽지 않은 지가지금에 17년이라 종사의 죄인이 되고 2천만 생민의 죄인이되었으니 한 목숨이 꺼지지 않는 한 잠시도 이를 잊을 수 없는지라. 유수(幽囚)에 갖히어 말할 자유가 없이 금일에까지이르렀으니 지금 한 병이 침중하니 한마디를 하지 않고 죽으면 짐이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하리라. 지금 나 경에게 위탁하노니 경은 이 조칙을 중외에 선포하여 내가 최애경애(最愛最敬)하는 백성으로 하여금 병합이 내가 한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게 하면 이전의 소위 병합 인준과 양국(讓國)의 조칙은 스스로 파기에 돌아가고 말 것이리라. 여러분들이여 노력하여 광복하라 짐의 혼백이 명명한 가운데 여러분을 도우리라. 조정구에게 조칙을 나리우심

□ 일진회 합방 성명서

(전략) 갑오년에 일본이 일청전쟁을 일으켜 수억의 전비를 쓰고 수만의 전사를 잃으면서 청국의 굴레를 벗어나 우리 한국의 독립을 확고히 얻었거늘, 정치를 탁하고 어지럽게 하고 우의를 배격하여 이 만세 기초를 잘 지키지 못함도 우리 한인이 스스로 취한 것이오, 마침내 러일전쟁의 인과를 매개로 일본의 손해가 갑오의 10배나 생기는 것도 돌아보지 않고 러시아인의 호구에 한 덩이 고기가 되는 것을 면하게 하고 동양전국의 평화를 유지하였거늘, 이 선리주의를 즐거이 따르지못하고 조진모초(아침에는 진나라에, 저녁에는 초나라에 붙었다 함)의 폐해가 생기므로 외교권을 다른 나라에 양여하고보호 조약을 성립시키는 데 이른 것도 우리 한국인이 스스로취한 바요, 한일관계가 이미 친밀한 이래로 감정을 융해하며 공예를 배워 문명모범을 자꾸 진보시켜 나가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헤이그 문제를 일으켜 일대 정변을 환기하고 7조약을 계속 성립하게 함도 우리 한인이 스스로 취한 바요,

이토 히로부미가 인민을 편안히 하며 동궁을 보도하여 우리한국에 노력을 다한 것을 가히 잊기 어렵거늘, 의외의 하얼빈변사를 일으켜 일본 전국의 여론이 비등하여 대한(對韓)정책에 근본적 해결을 주창함이 어떠한 위험을 불러일으킬는지알 수 없음도 우리 한국인이 스스로 취함이니 우리 한국은스스로 전제정치라. 인민의 권리를 속박하여 감히 자유롭지못했던 민족인즉 그 스스로 취한 책임을 질 자가 있거니와과거를 미루어 장래를 생각할지면 안위와 존망이 결코 민족이 책임져야할 앞길이라.

윌 황제폐하의 대일본 황제폐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단 정성으로 애소하여 우리 황실의 만세존승하는 기초를 공고히하며 우리 인민을 일등 대우하는 복리를 향유하여 정부와 사회를 더욱 발전시킬 것을 주창하여 하나의 큰 정치 기관을 성립할지면, 우리 한국의 보호, 열등에 있는 수치에서 벗어나동등정치에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니, 이는 법률상 정합방이라 일컫는 한 문제이다. (후략)